

의안번호	2200599
의 퇴 인	서지영 의원
회 답 일	2024.07.02.
추계번호	24C0599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‘대학·지역 동반성장지원전략’을 매 5년마다 수립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900만원 이상으로 추계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안 제5조의2 (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)	49	-	-	-	-	49	9.8

주 : 추계가 가능한 일부조항에 대한 결과값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	(제2항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·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<u>관계 기관 간의 협력</u>에 관한 사항 6. <u>지역의 산업·사회를 연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의 육성</u>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7.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8.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
2	<u>안 제5조의2</u> (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 전략의 수립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(이하 “지원전략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(제2항)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.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3. 제21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4.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. 시·도 기본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(제3항)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제4항) 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(제5항)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3	<u>안 제8조</u> 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)	(제1항)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제2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1.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.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.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. 제17조의2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6.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·변경·지정 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 8.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
4	<u>안 제17조</u> (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(이하 “대학지원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(제3항)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4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5항)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,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7조의2 (글로벌대학의 지정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·사회와 연계하여 교육·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글로벌대학(이하 “글로벌대학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(제2항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3항) 교육부장관은 글로벌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,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3.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의무규정
		(제4항) 글로벌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(제5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6항)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취소, 이의신청의 기준·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6	안 제18조(지방대학의 책무)	(제1항)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<u>글로벌대학 대학육성 계획</u> 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제2항)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·연구 환경을 조성하고,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·복지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제3항)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·학·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(제4항)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
1	안 제5조 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 립)	-	-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 본계획의 내용에 ‘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’과 ‘지역의 산업·사 회를 연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함 -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 내용이 추 기되더라도 수립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등은 크 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												
2	<u>안 제5조의2</u> <u>(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</u> <u>전략의 수립)</u>	0													
3	안 제8조 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)	-	- 개정안은 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 원회’의 심의·조정 내용에 안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과 안 제17조 의2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함 -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원의 추가 선임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, 2023~2024년의 동 위원회 개최 안건 등을 고려할 때 회의 개최 횟수 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※ [참고] 제5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위원회¹⁾ 회의 개최 실적 및 소요예산 <table><tr><th>일시</th><th>상정안건</th><th>소요예산</th></tr><tr><td>’23.6</td><td>특성화 지방대학 지정(안)</td><td>900,000원</td></tr><tr><td>’24.1</td><td>1)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(안) 2)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구성(안) 3) ’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시행계획 지침(안) 4) ’22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시행계획 추진실적(안)</td><td>600,000원</td></tr><tr><td>’24.6</td><td>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 2024년 시행계획(안)</td><td>700,000원</td></tr></table>	일시	상정안건	소요예산	’23.6	특성화 지방대학 지정(안)	900,000원	’24.1	1)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(안) 2)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구성(안) 3) ’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시행계획 지침(안) 4) ’22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시행계획 추진실적(안)	600,000원	’24.6	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 2024년 시행계획(안)	700,000원
일시	상정안건	소요예산													
’23.6	특성화 지방대학 지정(안)	900,000원													
’24.1	1)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(안) 2)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구성(안) 3) ’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시행계획 지침(안) 4) ’22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시행계획 추진실적(안)	600,000원													
’24.6	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 원 2024년 시행계획(안)	700,000원													
4	<u>안 제17조</u> <u>(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)</u>	x	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혁 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‘대학지원 협약’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동 협약에 따라 대 학의 자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	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		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대학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필요 예산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5	안 제17조의2 (글로벌대학의 지정 등)	x	■ 개정안은 현행법 제17조(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)를 삭제하고 글로벌대학에 대한 조항을 신설²⁾ ■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(5,722억원),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(2,375억원),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(750억원) 등을 재원으로 ‘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’를 추진하고 있으며,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 대학 중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5년간 교당 약 1,000억원의 지원받을 예정 ※ 교육부는 10개의 글로벌대학을 지정('23년)·지원하고 있으며, '24년 8월 10개 내외의 글로벌대학을 추가 지정할 예정 ■ 다만, 교육부의 지원 외에도 안 제17조(대학지원협약) 등을 통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있을 수 있으며, 특히 RISE체계 내에서 적극적 재정 지원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교육부의 국고 투입 이외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
6	안 제18조 (지방대학의 책무)	-	■ 개정안에 따라 지방대학은 기존 특성화 계획이 아닌 글로벌대학 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나, 기존 대학의 경비 등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를 계상하지 않음

1) 법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제5기는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과 충북도지사 등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3.4.3.~2025.4.2.임(자료: 교육부)

2) 교육부는 현행 법 제17조 및 교육부 「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(‘23.4.)」에 따라 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, ‘23년 지정된 10개 글로벌대학(대학수 기준 14개교)을 ‘23년 특성화 지방대학’으로 선정(지정기간 2023.12.~2028.2.)하였음. 다만, ‘특성화 지방대학’지원 관련 별도 사업 및 예산내역이 편성되지는 않았으며, ‘글로벌대학 추진방안’ 또한 기존 사업별 예산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나, 기존 특성화 지방대학이 ‘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’을 목적으로 한데 비하여, 개정안의 글로벌대학은 ‘지역의 산업·사회와 연계하여 교육·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’하기 위한 것으로 두 대학의 지정 목적이 다르고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주체도 현행법은 ‘교육부장관’인데 비해 개정안은 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’으로 상이하며, ‘대학지원협약’(안 제17조)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비용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‘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’(안 제5조의2)관련 비용을 추계함
- ‘대학·지역 동반성장지원전략(이하 “지원전략”이라 한다) 수립 비용’은 5년 주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비용을 추계하며,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수렴비용, 작업수당, 자료제작 및 홍보·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연구용역비는 교육부에서 발주하였던 ‘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·협력 방안 정책연구’의 연구용역비를 준용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원전략 수립 비용은 교육부에서 발주한 ‘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·협력 방안 정책연구’ 용역비를 준용하며, 2025년에 4,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의 지원전략은 ‘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’ 구축·운영(제2호),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등(제3호),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(제6호)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, 교육부가 2023년 발주하였던 ‘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·협력 방안 정책연구’와 주제 및 내용 등에서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동 연구용역비를 지원전략 수립비용으로 준용함
 - 안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며, 추계기간 중 2025년에만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 \ 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안 제5조의2 (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)	49	-	-	-	-	49	9.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